

## 목차

목차	2
자동차등록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임시운행허가기간	3
구비서류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,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	3



자동차등록

★ = 분야별정보 > = 교통/자동차 > = 차량등록·관리 > = 자동차등록 > = 임시운행허가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'이전등록 '변경등록 '신규등록 '말소등록 '저당권설정/말소등록 <mark>'임시운행허가</mark>

' 등록증(번호판)재발급 ' 등록원부발급 '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

### 수수료

증지대 - 1,800원

#### 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27조,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~제30

#### 임시운행허가기간

· 신규등록 : 10일 · 수 출(선적): 20일

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: 40일 시험,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: 2년의 범위내

•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6월

## 구비서류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,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

구분		구비서류
공통서류		임시운행허가신청서 의무보험(대인,대물)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(위임시 - 위임장, 위임받은자 신분증)
<b>+</b> -1115	신규출고	• 자동차제작증
	수입차량	· 수입신고필증
	수출차량	· 말소사실증명서(용도 - 수출선적증명용)
	부활등록	· 말소사실증명서(용도 - 부활등록용)

(http://www.yeosu.go.kr)

주가서류		
	시험연구	・시험연구계획서 ・사업자등록증사본(업종 : 연구용역) ・차대각자 ・연구소 인정서
	기 타	·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